

강사료지급규정

제정 1984. 5. 9. 21차 개정 2021. 12. 2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보수규정 제9조 및 강사규정 제12조에 의하여 강사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9.6.13., 2019.8.19.)

제2조(정의) ①〈삭제 2004.10.18〉

②시간강의라 함은 전임교원 이외의 교원이 시간제로 담당하는 수업을 말한다.(개정 2019.6.13.)

제3조(책임학점) ①전임교원의 주당 책임학점은 교무행정요강에 따른다.(개정 2004.10.18., 2016.7.7.)

②2인 이상의 교원이 공동강의(팀티칭)를 하는 경우, 각 교원의 담당학점은 해당 교과목의 총 학점이내에서 각 참여교원이 담당하는 시수로 한다.(신설 2016.7.7)

제4조(강사료의 지급) ①초과강의에 대하여는 실제 강의학점(시간)수에 의하여 초과강사료를 지급하되 초과강사료는 교무행정요강 제19조에서 정한 최고상한담당학점(시간)수 내에서만 지급한다.(개정 2004.10.18)

②시간강의에 대하여는 실제로 강의한 시간수에 의하여 시간강사료를 지급한다. 다만,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으로 학교가 임시휴업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중 휴강한 시간은 강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 강의를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1. 시험시간. 다만, 실지 시험시간표에 의거 근무한 자에 한한다.

2. 국가적인 행사 또는 총장 승인 하에 개최된 교내 행사로 학교 전체가 휴강한 때(개정 2015.6.4)

제5조(지급 기준액) ①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하며, 세부내역은 별표1과 같다. 다만, 수강인원이 110명 이상일 때에는 30%, 160명 이상일 때에는 50%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한다.(개정 2004.3.1., 2017.6.19.)

② 〈삭제(2017.9.11.)〉

③학부 수업의 수강(제한)인원에 따라 강좌별 인정 책임학점 수를 달리할 수 있으며, 세부사항 및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.(신설 2021.12.29.)

제6조(강사료 계산) 강사료는 주 단위로 계산한다. 다만, 학기말 또는 연도말의 강의에 있어서는 일주일 미만을 일주일로 계산할 수 있다.

제7조(강사료 지급일) 강사료는 매월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1984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2. 이 개정 규정(제3조)은 1988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3. ①이 개정 규정은 199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②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명예교수, 대우교수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.

4. 이 개정 규정(제4조제1항 단서)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7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05.16.)

이 개정 규정(제5조제2항)은 201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06.04.)

이 개정 규정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07.07.)

이 개정 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06.19.)

이 개정 규정은 201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09.11.)

이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1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8.04.17.)

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9.06.13.)

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하되,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19.10.22.)

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2.26.)

이 개정 규정은 2020년 2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20.04.20.)

이 개정 규정은 2020년 4월 20일부터 시행하되,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2021.12.29.)

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(별표1) (신설 2017.6.19. 개정 2018.4.17., 2019.2.19., 2019.6.13., 2019.8.19., 2019.10.22., 2020.2.26., 2020.4.20.)

강사료

(단위 : 원)

구 분		전 입	외 래(강사포함) 및 외국인	
			서울	글로벌
학 부	대단위	36,300	78,000	83,600
	중단위	31,500	68,000	72,400
	소단위	24,200	52,000	55,700
대학원·전문대학원		26,400	52,000	51,800
경영전문대학원		150,000		
특수대학원		35,200	57,200	58,200
명예·대우교수 겸임교수	대단위	87,500		
	중단위	75,800		
	소단위	58,300		

※ 교원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비전임교원 중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직종의 경우 출강캠퍼스 외래강사와 동일금액을 적용함(다만, 상담전문교수의 경우 특수대학원 야간 강의시에 한하여 지급함)

※ 강의교수는 전임교원과 동일금액을 적용함

※ 단위구분

- 대단위 : 수강생 수 160명 이상
(소단위 단가의 1.5배 적용)
- 중단위 : 수강생 수 110명 이상 159명 이하
(소단위 단가의 1.3배 적용)
- 소단위 : 수강생 수 109명 이하

※ 음악교육과의 ‘전공실기’는 해당 강사료의 50%를 적용함